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4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현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변론 종결 2020. 10. 14.

판결 선고 2020. 11. 1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7. 선고 2016가단52842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19. 접수 제379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2013. 6. 19. 접수 제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6. 19. 접수 제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19. 접수 제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은 220,000,000원의 원금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단순이행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박들의 매매계약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해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원고(당시 대표이사 C)는 2013. 6. 19. 피고(대표이사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기재 선박(E,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을 88,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선박(F,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하고, 위 각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을 132,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주주현황과 경영권 분쟁

- 1) 원고의 발행 주식 15만 주를 전부 소유한 G은 1997년경 2만 6,000주만 자신명의로 두고 나머지 주식을 C, H 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C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 2) 그런데 C 등이 회사를 임의로 운영하자 G은 원고의 회사 경영권 등을 되찾기위하여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991호로 C 등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8. G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3) C 등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5401호, 대법원 2016다232303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박들은 원고의 필수적인 영업재산이고 원고가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매매대금 220,000,000원 및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수리비 767,951,871원 상당을 지출하여 이 사건 선박들의 가액을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유익비를 반환하거나 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 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 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가 제2, 10, 12,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태안군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 원고는 골재채취법에 따라평택시에 '바닷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고의 본사 소재지인 평택시 1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모래 등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사실, 2 2011년경 위 사업장이 위치한 곳이 평택항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되어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바닷골재 채취 판매업을 할수 없게 된 사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23. 주식회사 J에 바닷골재 채취업 등록과 관련된 지위를 양도한 사실, 4 원고의 직원들이 2013. 5. 31.경 모두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4, 14 내지 17,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선박들은 원고의 영업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해사 채취 사업을 중단한 후인 2012. 3.경 해사 채취를 위해 이 사건 바지선에 부착되어 있던 주 엔진과 모래 펌프 등을 떼어내고 평 바지선으로 개조한 후 A 부두에서 해일을 막는 콘크리트 구조물 블록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선박들은 해사 채취 외의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므로,해사 채취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폐지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2. 7.부터 2013. 6.까지 합계 496,243,000원 상당의 운송 매출을 올렸고, 그와 함께 2012. 1.부터 2012. 9.까지 부두사용료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선박들은 계속 운항되고 있었다.

④ 비록 원고의 직원들이 2013. 5. 31.경 대부분 퇴사하였지만, 그 직원들은 이 사건 선박들의 선장과 선원들로 이 사건 선박들과 운명을 같이 하던 사람들로써 피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승계가 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영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의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필수적인 영업재산인 이 사건 선박들을 처분하는 것으로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유익비채권(또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분

가) 매매대금의 원금 220,000,000원 부분

(1)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점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조립식 건물 철거비로 지출한 23,100,000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조립식 건물 철거비가 이 사건 선박들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선박들의 가액이 2,000,000,000원 정도였음에도 피고에게 불과 220,000,000원의 헐값에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C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임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어 C가 이 사건 선박들을 싼값에 처분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선박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선박들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박들의 가액이 2,00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박들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바지선의 주 엔진 등이 원고에 의해서 제거되어 모래 채취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바지선과 한 세트인 이 사건 예인선의 가액도 함께 내려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바지선의 용도를 변경하여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부진하였다.

③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선박들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선박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매수하려는 자가 없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매매대금의 법정이자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령일인 2013.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도 청구한다.

(2) 판단

(가)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 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참조).

(나) 한편 '악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매대금 수령 당시부터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1. 29. 무렵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1. 29.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인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채권(또는 손해배상채권)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해 수리비 등 성능개선을 위해 2016. 12. 18.까지 767,951,871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에 상당한 수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금액 상당을 유익비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수리비가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편의를 위하여 들인 비용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6.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선박들의 가치 증가액 입증을 위하여 감정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결국 감정신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들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이 사건 선박들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들을 주식회사 K로부터 매수하기 전 임대료로 위 회사에 지급한 월 16,5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가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가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선박의

임대료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바지선에 대하여 주 엔진 등을 제거하는 등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 가치가 하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박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임대료가 매월 16,5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선박들의 객관적인 시가 및 월 임대료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③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바지선은 2016. 12. 11. 이후에는 대부분 인천 남항에 정박시켜 두고 있고,

이 사건 예인선도 2016. 12. 17. 이후에는 인천 작약도 북단에 정박시켜 두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따라서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매대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박상수, 판사 정은영

[별지]

목 록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 선적항 인천광역시
 - 선질 강
 - 총톤수 159톤
 - 기관의 종류와 수 디젤발전기 1500마력 2대
 -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추진기 2대
 - 전수연월일 1968년 8월 1일
2. 선박의 종류와 명칭 부산
 - 선적항 인천광역시
 - 선질 강
 - 총톤수 1494톤
 - 전수연월일 1999년 12월 (끝)